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이 승 원[†] 이 수 정[‡] 서 혜 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p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 전자감독, 보안처분, 성범죄자, 재범추적, 생존분석

* 이 논문은 2021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이승원,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심리학 석사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E-mail: suejung@kyonggi.ac.kr

서론

2008년에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킨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은 매우 큰 분노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생겨났고 61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감독 제도를 7년 선고받았으며 사회 안전에 매우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받는 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는 보안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1전담 보호관찰제도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안처분은 전자감독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2006년에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강호성, 문희갑, 2010). 시행 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나, 2009년부터는 전자감독 대상에 성범죄자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를 포함시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2010년에는 전자감독대상범죄에 살인범죄자를 포함시켜 개정하였으며, 2014년 법률 개정에는 강도범죄자까지 추가하였다.(김대진, 2017). 가장 최근인 2019년 4월 9일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32조의2에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된 전자감독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법무부, 2019).

국내 전자감독대상자는 2014년에 2,129명에서 2018년에는 3,126명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자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범죄백

서, 2019).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평균적인 재범 기간을 파악하여, 정교하고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재범 기간에 대한 추적연구는 해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장기적으로 성범죄 재범을 추적한 선행연구들은 교도소 출소 이후 몇 년 이내에 재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Soothill & Gibbens, 1978; Hanson, Steffy, & Gauthier, 1993; Prentky, Lee, Knight, & Cerce, 1997; Cann, Falshaw, & Friendship, 2004; Hanson, Harris, Helmus, & Thornton, 2014; Blokland & van der Geest, 2015; Hanson, Harrison, Letourneau, Helmus, & Thornton, 2018).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총 24,000명을 대상으로 61개의 재범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성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출소 이후 3~4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Hanson & Bussiere, 1998), 미국 미주리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평균적인 재범기간은 약 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Valentine & Huebner, 2006). Harris와 Hanson(2004)은 캐나다, 미국, 영국의 10개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총 4,724명을 강간범죄, 아동 성범죄로 분류한 후 15년에 걸친 재범 추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생존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5년 이내 14%, 5년~10년 이내에 6%, 10년~15년 이내에 4%의 재범이 확인되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체포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Langan & Levin, 2002;

Hepburn & Griffin, 2004),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범이 발생하는 빈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의 경우 재차 재범하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Meloy(2005)는 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시작 이후 18개월 기간이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성범죄자 재범에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재범은 대부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년 이후 4년 이내에 재범으로 등록된 사건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성범죄백서, 2020). 또한 성범죄백서(2020)에 따르면, 성범죄는 이종 재범 사건이 동종 재범보다 약 6배 이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현황을 보면(범죄백서, 2019), 3년 이내로 재범을 하는 비율이 68.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계자료와 해외 연구를 미루어볼 때, 평균적으로 3~4년 이내에 재범발생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 및 심리적 기제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조일형, 권기현, 2011), 한 번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은 재범기간과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하여, 정교함을 갖춘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이 재범까지 이르는 기간을 살펴보고, 나아가 동종재범과 이종재범 각각의 재범기간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로 분류된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이라는 통제 하에서 어떠한 재범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론적 배경

국내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2006년에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강호성, 문희갑, 2010).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흉악한 성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으며, 이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은 여타의 범죄자들보다 더 강력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자감독대상자 인원은 2014년에 2,129명에서 2018년에는 3,126명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인원이 편승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 현황은 전자감독시행 중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2014년 이후부터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재범률은 근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재범률은 94건으로 전체 실시사건 중에서 2.01%로 확인되어, 상당히 낮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에는 성폭력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동종재범 사건 수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으로서, 2014

표 1. 연도별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시사건	18,797	2,370	2,650	2,894	3,046	3,270
동종재범사건 (재범률)	378 (2.01)	48 (2.03)	53 (2.00)	58 (2.00)	66 (2.17)	83 (2.53)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년에 48건에서 2018년에 83건으로 5년간 동종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재범 고위험군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여파로 재범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범죄백서, 2019).

성범죄 재범특성

성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 범죄이다. 범죄백서(2019)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발전과 효과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전체 성범죄 재범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재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끔찍하고 잔혹한 성범죄를 지켜봄으로써 불안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은 동적(dynamic)위험요인과 정적(static)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Beech & Ward, 2004; Mann, Hanson & Thornton, 2010). 정적 위험요인은 최초 입건 연령, 나이, 혼인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범죄력 등 성범죄자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이 고정된 위험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동적 위험요인은 범

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 일탈적 성적 기호 등 측정 가능한 성범죄자들의 변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성범죄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을 하여 행동적인 개선을 줄 수 있는 동적 위험요인은 안정적(stable)동적요인과 급성(acute)동적요인이 있다(Hanson & Harris, 1998). 변화 가능한 특성을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동적요인은 성격, 반응성 수준, 인지 왜곡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짧은 기간 내에 변화 가능한 급성 동적요인은 약물남용,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고립감, 부정적 감정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적 위험요인은 통계적인 절차와 실증적인 연구들로 재범과의 관련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요인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을 예측할 때 유용하고(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Barbaree, Seto, Langton, & Peacock, 2001), 동적 위험 요인은 재범 위험성 변화 수준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개입하여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감소를 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다(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Campbell, French, & Gendreau, 2007).

성범죄 재범에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적 일탈성, 즉 성도착증이 있다. 성도착이란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상황에서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고 병적인 성적 기호를 가진 것이다(이수정, 위희정, 2015). 해외의 경우, Abel과 Becker(1985)의 연구에서 성범죄 재범의 고위험군이 성도착의 특성과 관련 있음을 조사하였는데, 성도착 증상을 보이는 성범죄자들 중에서 23.3%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보아 성도착적 증상을 지닐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 재범과 성도착의 관련성을 연구한 Abel과 Rouleau(1990)에 따르면, 성도착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범죄력을 분석하였을 때 마찰도착증, 관음증, 노출증 등의 성적 일탈성 행위가 가장 빈번하였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져 왔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561명의 성도착증을 지닌 환자들 중에서 126명이 총 907건의 강간을 저질렀다는 보고를 통하여 성도착증이 성범죄 재범에서 중요한 인자 될 수 있으며 이에,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바 있다(이수정, 위희정, 2015). 이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특성들은 다소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개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재범추적 연구

성범죄자들의 재범 기간에 대한 추적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활발히 수행되어왔다. 미국에서 성범죄자 24,000명을 대상으로 한 61개의 재범 연구 결과, 교도소 출소 이후 3~4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Bussiere, 1998), 미국 미주리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추적한 결과(Valentine, Huebner, 2006),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평균적인 재범기간은 약 4년으로 나

타났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에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연구하였는데(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 2007), 연구 관찰 기간별로 관찰 기간 1년에는 3.2%, 3년에는 7.3%, 10년에는 11.3%의 성범죄 재범률을 보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관찰 기간이 늘어날수록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nn & Muirhead-Steves(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에 이르는 기간을 상대적으로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추적을 통해 성범죄자 재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생존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변별하는 KSORAS 점수의 기준점을 15점으로 두었을 때, 2년을 기준으로 성범죄 재범에서 KSORAS 점수가 15점 이상인 고위험군의 생존율은 81%였고, 점수가 14점 이하인 저위험군의 생존율은 93%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범죄 재범의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재범시기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수지, 조윤오(2020)의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생존기간은 평균 20개월이었으며 60개월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년 이후부터 4년 이내 재범으로 등록된 사건이 총 1,963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였다(성범죄백서, 2020). 또한 성범죄백서(2020)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를 살펴보면, 총 113,916건의 성범죄 사건 중

동종 재범은 15,636건으로 전체 재범 사건에서 13.7%를 차지하고 이종 재범은 98,280건으로 전체 재범 사건에서 86.3%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성범죄는 이종 재범 사건이 동종 재범보다 약 6배 이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체 15,636건의 동종 재범 발생 건 수 중에서 10,971건(70.2%)이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성범죄백서, 2020). 또한 2018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현황을 보면(범죄백서, 2019), 총 83건의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3년 이내로 재범을 하는 비율이 68.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수행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추적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모든 범죄의 평균 재범기간이 20.51개월로 보고되는 바,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한수지, 조운오, 2020). 이와 같이 국내의 통계와 해외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성범죄자 집단의 경우 평균 3~4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도구(KSORAS)의 개정 연구를 통해 수집되었다. 법무부로부터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전자감독 중 재범으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최초 분류한 후 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총 2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조사자가

기록문서들을 직접 검토하여 위치추적 시작기간과 종료기간, 재범 유무, 재범기간, 동종재범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자들이 검토한 자료들은 형사사법시스템(KICS)내에 있는 정보와 “청구전 조사서”, “판결전 조사서”, 과거전과 기록에 대한 기록문서로 구성되었다. 위 문서들을 토대로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본범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이전 전과력 및 재범 정보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범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재범 시점은 각 대상자의 위치추적 시작일부터 종료일 사이에 저지른 범죄 중 유죄(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유죄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만일, 재체포일을 재범일로 본다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경우 혹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1종오류와 2종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홍영오, 강호성, 노일석, 2012).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재범여부와 재범기간을 확정하였고 재범죄명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집된 대상자 중 2명은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기소되었으나 유죄판결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제거하여 총 248명의 대상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재범집단 122명과 비재범집단 1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분석에 활용된 재범집단은 전자감독 중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동종재범 집단과 기타범죄 재범을 저지른 이종재범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생존기간을 토대로 두 집단의 생존기간을 알아보고, 두 집단의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표 2. 재범추적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주	명(%)
연령	20대(20-29세)	4(3.3)
	30대(30-39세)	40(32.8)
	40대(40-49세)	41(33.6)
	50대(50-59세)	29(23.8)
	60대(60-69세)	5(4.1)
	기타(70세이상)	3(2.4)
	학력	고졸이상
고중퇴이하		56(45.9)
결측		12(9.8)
직업	무직	67(54.9)
	일용직	13(10.7)
	일반회사원	5(4.1)
	자영업	9(7.4)
	기타	17(13.9)
	범죄 유형	강간(성인)
강제추행(성인)		12(9.8)
준강간(성인)		1(0.8)
강간(청소년)		2(1.6)
강제추행(청소년)		4(3.3)
준강간(청소년)		1(0.8)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		11(9.0)
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		3(2.5)
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		1(0.8)
강간(친족관계)		4(3.3)
강제추행(친족관계)		3(2.5)
기타	6(4.9)	

예측하는 지표로 보고 된 성범죄 전력과 폭력 범죄 전력의 재범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재범 집단과 비재범집단을 분류한 후 Cox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범추적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범추적연구의 대상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중 재범이 확인된 1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자감독 시행 중 성범죄재범을 저질러 유죄로 확정된 대상자는 34명이었으며, 이외 기타범죄로 처벌을 받은 대상자는 88명이었다.

재범추적 대상자는 30대(32.8)와 40대(33.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대상자는 44.3%이고, 고중퇴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45.9%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무직(60.7)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잦은 범죄와 처벌로 인해 일상적인 꾸준히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범죄명의 빈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60.7), 다음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9.8) 그리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9.0) 순서로 많았다.

비재범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선행 연구들(Rice, Harris, & Quinsey, 1990; Quinsey, Rice, & Harris, 1995; Hanson, & Bussiere, 1998; Langan, & Levin, 2002; Bonta, & Andrews, 2003)에 의하면 범죄전력변인은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범죄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범위험성을 보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하는데 있어, 범죄전력변인이 유효한 예측력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하였다. 비재범 집단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 받은

표 3. 전자감독 중 비재범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주	명(%)
연령	20대(20-29세)	5(4.0)
	30대(30-39세)	31(24.6)
	40대(40-49세)	51(40.5)
	50대(50-59세)	27(21.4)
	60대(60-69세)	10(7.9)
	기타(70세이상)	2(1.6)
	학력	고졸이상
고중퇴이하		54(42.9)
결측		5(4.0)
직업	무직	18(14.3)
	일용직	12(9.5)
	일반회사원	15(11.9)
	자영업	38(30.2)
	기타	40(31.7)
범죄 유형	강간(성인)	71(56.3)
	강제추행(성인)	5(4.0)
	준강간(성인)	0(0)
	강간(청소년)	9(7.1)
	강제추행(청소년)	4(3.2)
	준강간(청소년)	1(0.8)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	18(14.3)
	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	5(4.0)
	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	0(0)
	강간(친족관계)	7(5.6)
	강제추행(친족관계)	4(3.2)
	기타	2(1.6)

대상자 중 재범이 확인되지 않은 1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들의 연령을 포함한 인

구통계학적 변인과 본범죄명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비재범집단 대상자의 연령은 40대(40.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24.6)와 50대(21.4)순이다. 학력은 고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53.2%로 확인되었고, 직업은 기타를 제외하였을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의 경우, 강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모두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범집단, 비재범집단 모두 강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분석 방법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였으며,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과 Log Rank Test, Generalized Wilcoxon Test 분석, Cox회귀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R4.0.3의 survival 패키지와 survminer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생존분석은 연구자가 정의한 사건(event)의 발생 여부와 사건 발생 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방법이며, 사건의 발생은 주로 출생, 사망, 재범 등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노연경, 홍세희, 2010).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건은 전자감독 중 재범으로 정의하고, 재범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전자감독 시작일과 재범 사건의 체포시점까지 생존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은 경찰관서에 해마다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 및 저장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하는 재범으로 보기 어렵기에,

본 연구의 재범에서 제외하였다.

생존분석은 중도절단된 자료(censored data)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통계기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중도절단의 원인은 생존 시간이 정확하지 않지만, 절단되기 직전까지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생존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연구가 종료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존재할 때를 말한다(Kleinbaum, 1996; Hosmer, & Lemeshow, 1999). 생존분석과 관련된 함수는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과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이 있다. 생존함수는 t 라는 특정 시점이 있을 때, t 시점에 생존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위험함수는 t 라는 특정시점까지 생존한 경우, 다음 시점에 재범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존함수를 통해 산출된 값을 누적하여 관찰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낸 것을 누적생존곡선(cumulative survival function curve)이라 하고, 위험 함수를 통해 산출된 값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면 누적위험곡선(cumulative survival function curve)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표법(life tables)과 Kaplan-Meier 분석, 로그순위검정분석을 활용하여, 시간 대 사건(time-to-event) 변인의 분포를 확인하고(고려진, 손세립, 한상국, 이수정, 2016), 생존기간에 따른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하여 두 집단 간 생존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지표로 보고 된 바 있는, 성범죄 전력과 폭력범죄 전력의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재범 집단과 비재범집단을 분류한 후 Cox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 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생존분석

분석에 활용된 재범의 유형은 전자감독 중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동종범죄와 이종범죄 모두를 포함한다. 재범을 사건(event)으로 입력하였으며,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명표(life table)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시간 간격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간격은 12개월 단위로 하였다. 생명표의 사건 수는 각 단위 개월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한 사건의 수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 간격을 1년 단위인 12개월로 정하였기 때문에, 1년마다 발생하는 재범의 수를 계산한다.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사건 수를 살펴보면, 전자감독 실시 후 1년 이내에 44건, 2년 이내 27건, 3년 이내에 24건의 재범이 확인되었다. 즉, 전체 재범 122건 중 95건이 3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누적 생존비율은 각 시간 간격의 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누적확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생존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되어진다. 누적 생존비율이 낮은 수치를 보일수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높은 비율인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에 누적생존함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는데, y 축에는 누적생존비율, x 축에는 재범 발생 시간을 표시한다. 추적 시작 시점에는 1.0(100%)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범죄 전자감

표 4.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생명표

시간간격 (개월)	생존 수	사건 수	종결된 사건 비율	단위기간 생존비율	누적생존 비율	누적생존 비율 표준오차	밀도 확률	밀도확률 표준오차
0	122	44	.36	.64	.64	.04	.030	.004
12	78	27	.35	.65	.42	.04	.018	.003
24	51	24	.47	.53	.22	.04	.016	.003
36	27	12	.44	.56	.12	.03	.008	.002
48	15	11	.73	.27	.03	.02	.008	.002
60	4	2	.50	.50	.02	.01	.001	.001
72	2	2	1.00	.00	.00	.00	.001	.001

독대상자의 경우 4년 이전 시점까지 상당수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12개월=.64, 24개월=.42, 36개월=.22), 이 후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표에서의 밀도확률이란 각 구간의 시작점에서 대상자의 비율과 구간 끝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살아 있는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밀도 확률이 큰 수치를 나타낼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1년 이내의 밀도 확률이 .03, 2년 이내의 경우 .018, 3년 이내 .016으로, 3년 이내에 재범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한수지, 조윤오, 2020; Hanson & Bussiere, 1998; Valentine & Huebner, 2006)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국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또한 대부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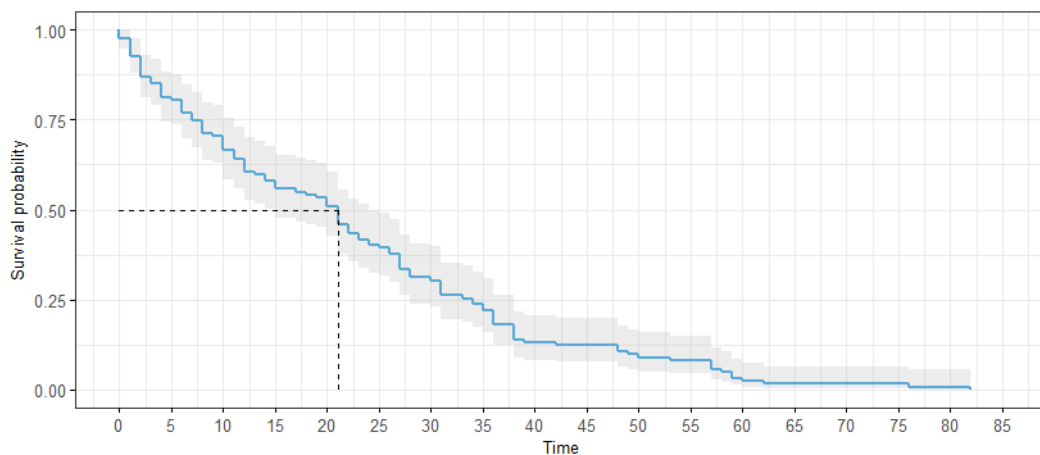


그림 1. 전자감독대상자의 누적생존비율 그래프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에 대한 생존분석

위 분석에 활용된 대상자를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으로 분류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동종재범이란 전자감독 실시일 이후 관찰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종재범은 전자감독 실시일 이후 관찰기간 동안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시간간격(개월 수)은 12개월(1년) 단위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12개월씩 증가하여, 총 관찰 개월은 72개월이다. 두 집단의 생명표(표 5 참고)와 그래프(그림 2 참고)는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생존 수는 단위 개월 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생존해 있는 수를 의미한다. 이종재범집단은 총 88명으로 구성되었고, 동종재범집단은 총 34명이기 때문에, 각 생존 수는 88과 34로 시작한다. 이종재범 집단에서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35건이고 동종재범 집단에서는 9건이었다. 누적 생존비율은 앞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위구간의 끝에서 비율이 낮을수록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누적 생존비율은 1년 이내를 기준으로 각각 .60, 와 .74였고, 2년 이내에는 .38와 .53, 3년 이내의 경우 .18, 와 .32로 확인되어, 이종 재범집단과 동종재범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밀도확률 또한 비율이 높을수록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

표 5.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의 생명표

	시간간격 (개월)	생존 수	사건 수	종결 된 사건 비율	단위기간 생존 비율	누적 생존 비율	누적생존 비율 표준오차	밀도 확률	밀도확률 표준오차
이종재범	0	88	35	.40	.60	.60	.05	.033	.004
	12	53	20	.38	.62	.38	.05	.019	.004
	24	33	17	.52	.48	.18	.04	.016	.004
	36	16	6	.38	.63	.11	.03	.006	.002
	48	10	7	.70	.30	.03	.02	.007	.002
	60	3	1	.33	.67	.02	.02	.001	.001
	72	2	2	1.00	.00	.00	.00	.002	.001
동종재범	0	34	9	.26	.74	.74	.08	.022	.006
	12	25	7	.28	.72	.53	.09	.017	.006
	24	18	7	.39	.61	.32	.08	.017	.006
	36	11	6	.55	.45	.15	.06	.015	.005
	48	5	4	.80	.20	.03	.03	.010	.005
	60	1	1	1.00	.00	.00	.00	.002	.002
평균 생존		이종재범집단 : 21.03, 동종재범집단 : 2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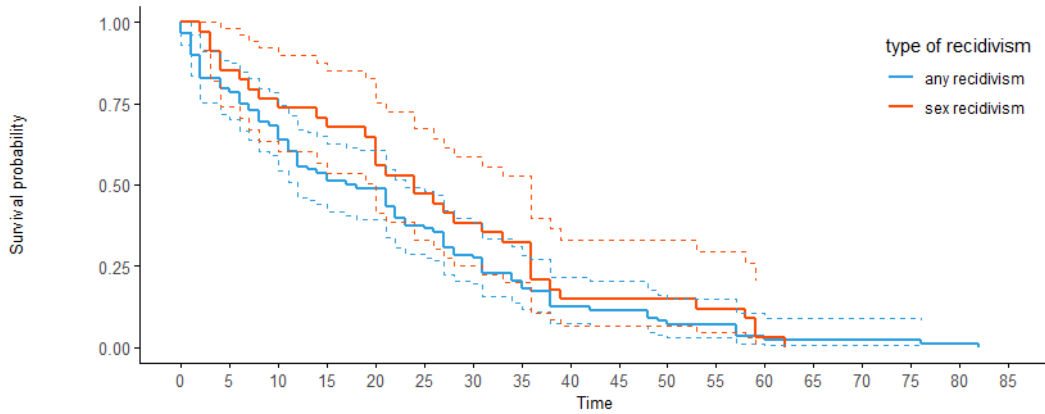


그림 2.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비교 그래프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종재범집단과 동종재범집단 모두 1년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종재범집단의 경우에는 3년 이후로 밀도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동종재범집단에서는 다소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의 재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3년~4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재범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단위구간별 생존율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종재범의 경우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종재범의 경우에는 단위구간마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og Rank Test와

Generalized Wilcoxon Test를 활용하여 검정한 결과(표 6 참고), Chi-squared값이 3.84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의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에 범죄전력이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폭력범죄 전력과 성범죄 전력이 성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Harrison과 Hanson(2004)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은 성범죄 초범자의 재범률에 약 2배정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존기간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전력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범죄전력을 비교분석한 결과(표 7 참고), 성범죄 전력 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 모두 재범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539^*$, $t=4.706^{***}$).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에 대한 Cox 회귀분

표 6. 생존율 비교 결과표

	X^2	df	p
Log Rank(Mantel-Cox)	1.345	1	.25
Generalized Wilcoxon	2.326	1	.13

표 7.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범죄전력 평균차이 분석

	재범집단(n=122)	비재범집단(n=126)	t
성범죄 전력횟수	2.33(1.23)	1.93(1.25)	2.539*
폭력범죄 전력횟수	3.61(4.13)	1.62(2.34)	4.706***

*p<.05, ***p<.001

석 결과, 모형계수에 대한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p<.001$). 분석 내용에서는 폭력범죄 전력횟수가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폭력범죄 전력횟수가 1 증가할 때

다 재범가능성이 1.088배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Wald = 17.325$, $Exp(B) = 1.088$, $p<.001$). 그러나 성범죄 전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Wald = 3.42$, $Exp(B) = 1.136$, $p = .064$). 이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우,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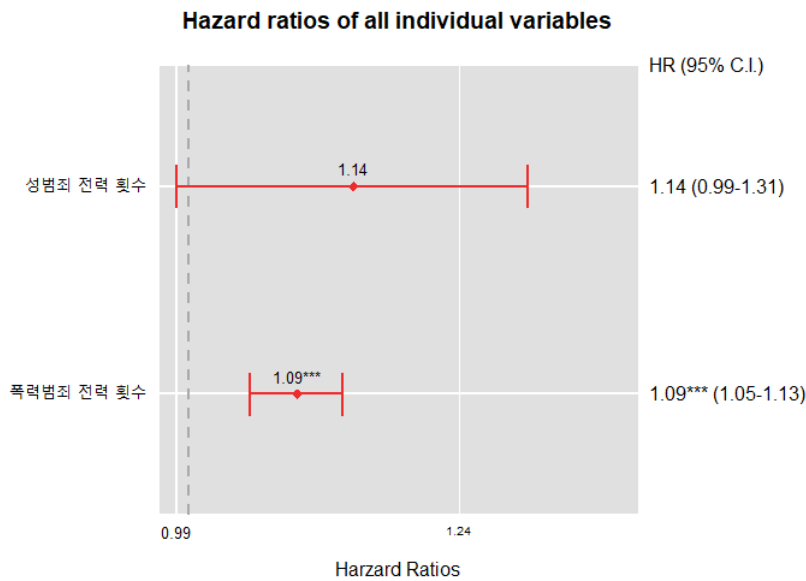


그림 3. 재범에 대한 각 범죄전력의 위험비 그래프

표 8. 범죄경력 변인의 재범예측에 대한 모형 검정

	-2Log Likelihood	전체 통계량(점수)			이전 단계와의 상대적 변화			이전 블록과의 상대적 변화		
		X^2	df	p	X^2	df	p	X^2	df	p
1단계	1226.952	27.33	2	.000	21.00	2	.000	21.00	2	.000

표 9. 재범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Cox회귀분석 결과

	<i>B</i>	<i>S.E</i>	<i>Wald</i>	<i>df</i>	<i>p</i>	<i>Exp(B)</i>	<i>Exp(B)</i> 에 대한	
							95.0% <i>CI</i>	
							Lower	Upper
성범죄 전력 횟수	.129	.070	3.42	1	.064	1.136	.992	1.304
폭력범죄 전력 횟수	.084	.020	17.33	1	.000	1.088	1.046	1.132

력이 확인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을 것이기에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 간에 큰 편차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에 높은 예측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논의에 서술하였다.

논 의

현재 전자감독제도는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재범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범죄, 강도범죄, 유괴범죄 등 전자감독 대상 범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 2008년 전자감독이 시행된 이후로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용성을 논의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재범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나 재범기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을 추적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온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 양상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동종재범집단과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연구에서(Rice, Harris, & Quinsey, 1990; Quinsey, Rice, & Harris, 1995; Hanson, & Bussiere, 1998; Langan, & Levin, 2002; Bonta, & Andrews, 2003) 보고된 바와 같이 성범죄 전력과 폭력범죄 전력변인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와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재범예측에도 높은 효용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는 36개월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추적 결과(Hanson & Bussiere, 1998; Valentine & Huebner, 2006)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전자감제로도 인해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Finn & Muirhead-Steves, 2002)에서는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생존기간은 일반 성범죄자의 생존기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내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집단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범률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누적생존율이 1년 이내에 .64였고, 밀도확률이 .30으로 1년 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존율은 3년 이내에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중재범집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명표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생존율은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종재범집단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재범집단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이중재범집단은 3년 이내에 비교적 많은 대상자가 재범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동종재범집단의 경우 단위구간별로 재범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두 집단 간 생존율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을 분류한 후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였을 때, 성범죄 전력횟수보다 폭력범죄 전력횟수가 재범위험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 = 17.325$, $Exp(B) = 1.088$, $p < .001$).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고찰하자면,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선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 성범죄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을 미루어볼 때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횟수의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폭력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폭력전과는 각 대상자별 편차가 확연히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 충동성과 공

격성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유효한 위험예측인자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성범죄 전력과 폭력범죄 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개별적인 예측력에 비해 폭력범죄전력과 성범죄 전력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X^2=27.33$, $df=1$, $p < .001$).

본 연구에서는 재범일의 기준을 유죄확정을 받은 사건의 발생일로 산출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재범추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 재범이 아닌 동종재범과 이중재범으로 세분화하여, 재범 양상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였기 때문에 전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활용된 재범집단은 전자감독 중 재범을 저질러 유죄로 확정된 대상자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집단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성범죄 전자감독 재범집단을 대표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재범추적 연구는 통상적으로 같은 시점에 전자감독을 실시한 대상자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범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전자감독 부과 기간, 위치 추적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달랐다. 마지막으로 동종 재범집단과 이중재범집단의 생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와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각종 범죄의 재범기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재범예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범집단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재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감독제도는 재범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소요기간이 대부분 3년 이내로 확인되었다. 해외 연구자인 Meloy(2005)는 보호관찰 시작 이후 18개월 기간이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전자감독 중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전자감독만으로 재범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집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준거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지속적으로 커지자 1:1 전담 보호관찰제도가 빠르게 마련되었고, 전자감독 대상자 내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등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사회 내 처우나 보안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준거들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 학대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 별 고위험 집단에 대한 특성연구, 재범연구 등을 수행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점차 강화되어가는 보안처분의 준거, 처분기간, 개입방안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호성, 문희갑 (2010). 전자발찌 도입 2 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보호관찰*, 10(2), 39-135.
- 고려진, 손세림, 한상국, 이수정 (2016).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판 PCL-R 의 예측타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263-291.
- 김대진 (2017).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법무부*
- 김성돈 (2015).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27(4), 1-34.
- 노연경, 홍세희 (2010).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폭력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조사연구*, 11(3), 81-101.
- 박상진, 신준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17(1), 313-337.
- 법무부 (2019).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 관리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보도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2020 성범죄 백서*.
-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 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9(4), 999-1016.
- 이수정, 위희정. (2015).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14(4), 403-428.
-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33-803.
- 조일형, 권기현 (2011). 간이시계열에 의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 20(1), 225-253.
- 한수지, 조윤오 (2020). 전자감독 범죄자의 범죄유형 별 재범 시기 비교 연구. *교정담론*, 4(1), 273-294.
- 홍영오, 강호성, 노일석 (2012).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bel, G. G., & Rouleau, J. L. (1990). The nature and extent of sexual assault. In *Handbook of sexual assault* (pp. 9-21). Springer, Boston, MA.
- Barbaree, H. E., Seto, M. C., Langton, C. M., & Peacock, E. J. (2001). Evaluating the predictive accuracy of six risk assessment instruments for adult sex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 490-521.
- Beech, A. R., & Ward, T. (2004). The integration of etiology and risk in sexual offenders: A theoretical framewor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31-63.
- Becker, J. V., & Abel, G. G. (1985). Methodological and ethical issues in evaluating and treating adolescent sexual offenders. *Adolescent sex offenders: Issues in research and treatment*, 109-129.
- Blokland, A. and van der Geest, V. (2015) Life-Course Transitions and Desistance in Sex Offenders: An Event History Analysis. In A. Blokland & P. Lussier (Eds.), *Sex Offenders: A Criminal Career Approach*. Chichester: Wiley. 257-288.
- Bonta, J., & Andrews, D. A. (2003). A commentary on Ward and Stewart's model of human needs. *Psychology Crime and Law*, 9(3), 215-218.
- Campbell, M. A., French, S., & Gendreau, P. (2007). Assessing the utility of risk assessment tools and personality measures in the prediction of violent recidivism for adult offender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Cann, J., Falshaw, L., & Friendship, C. (2004). Sexual offenders discharged from prison in England and Wales: A 21-year reconviction stud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10.
- Cox, D. R. (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4(2), 187-202.
- Finn, M. A. & Muirhead-Steves, S. (2002).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Justice Quarterly*, 19(2), 293-312.
- Gelb, K. (2007).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search paper. Sentencing Advisory Council,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 Harris, A. (1998).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Ottaw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Hanson, R. K., Harris, A. J. R., Helmus, L., & Thornton, D. (2014). High risk sex offenders may not be high risk forev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 2792-2813.
- Hanson, R. K., Harris, A. J., Letourneau, E., Helmus, L. M., & Thornton, D. (2018). Reductions in risk based on time offense-free in the community: Once a sexual offender, not always a sexual offender.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4*(1), 48.
- Hanson, R. K., Steffy, R. A., & Gauthier, R. (1993). Long-term recidivism of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46-652.
- Hepburn, J., & Griffin, M. (2004). An analysis of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on prob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Hosmer, D. W. & S. Lemeshow. (1999). *Applied Survival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and Son
- Kleinbaum, D. G. (1996). *Survival Analysis: A Self-Learning Text*, New York: Springer-Verlag
- Langan, P. A., & Levin, D. J. (2002).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94.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Mann, R. E., Hanson, R. K., & Thornton, D. (2010). Assessing risk for sexual recidivism: Some proposals on the nature of psychologically meaningful risk facto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2*, 191-217.
- Meloy, M. L. (2005). The sex offender next door: An analysis of recidivism, risk factors, and deterrence of sex offenders on probation.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6*(2), 211-236.
-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s. (2007). Sex offender recidivism in Minnesota. from www.doc.state.mn.us
- Prentky, R. A., Lee, A. F. S., Knight, R. A., & Cerce, D. (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635-659.
- Quinsey, V. L., Rice, M. E., & Harris, G. T. (1995). Actuarial prediction of sexual recidiv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 85-105.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1990). A follow-up of rapists assessed in a maximum-security psychiatric fac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4), 435-448.
- Soothill, K. L., & Gibbens, T. C. N. (1978). Recidivism of sexual offenders: A re-appraisal.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8*, 267-276.
- Valentine, D., & Huebner, B. (2006). Sex offender recidivism in Missouri and community correction options. Institute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1 차원고접수 : 2021. 01. 21.
심사통과접수 : 2021. 03. 18.
최종원고접수 : 2021. 03. 21.

Recidivism Follow-Up Study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SeungWon Lee

SueJung Lee

HyeRan Seo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survival rates of thos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of sex crimes based on the tracking of the period of recidivism and whether they were recidivism, and wanted to confirm the ability of the criminal record to predict recidivism. The criteria for recidivism were defined as cases where a conviction was confirmed due to a criminal case that oc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date of recidivism was the date of occurrence of a case that was confirmed guilty. A total of 122 re-offenders were used in the analysis, and all of them were charg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for committing sex crime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subjects commit the most recidivism within three years.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survival rate between groups was analyzed after classifying mixed and sex recidivism cases. The number of members was 88 for the mixed recidivism group and 34 for the sex recidivism group. The analysis confirmed that both groups had the most recidivism within three year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al rate of the mixed recidivism group and the survival rate of the sex recidivism group. So the Log Rank Test and the Generalized Wilcoxon Test were conducted,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Next, a Cox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ability of the criminal record to predict recidivism. As a result,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sex offense, violent crime) have been confirmed to be a good predictor of recidivism($X^2=27.33$, $df=1$, $p < .001$).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the duration of recidivism required by sex offenders in high-risk groups was found to be rather short. Currently, security measures against felons are being strengthened,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high-risk groups. Therefore, based on the relate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groups and the results of recidivism studie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isposal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will play a major role in granting objectivity.

Key words : Electronic monitoring, Security measure, Sex offenders, Recidivism follow-up, Survival Analysis